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934호

「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290호, 2018. 5. 18.)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」 전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항공안전법령 개정 내용과 일관성을 도모하고,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등에 관한 방법, 기준 등을 고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

- 1) 모의비행장치, 비행훈련장치에 기본비행훈련장치를 추가
- 2) 모의비행장치 1~3등급을 A~D등급으로 변경(헬리콥터는 B~D등급)
- 3) 비행훈련장치는 비행기(가~라), 헬리콥터(단일등급)에서 4~7등급으로 변경, 기본비행훈련장치(비행기·헬리콥터)는 단일등급으로 구분

나. 모의비행장치·비행훈련장치(비행기·헬리콥터) 종류별 성능에 관한 기준을 일반·정량·정성적 기준으로 분류(기본비행훈련장치는 구분없이 검사)

다. 이미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운영자의 지정 신청 및 조건 충족 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개정

라. 개정 이전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기존 등급, 유효기간, 운용범위 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하여 항공사, 훈련기관 등의 불편 최소화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항공안전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
- 전화 : 044-201-4257 / 팩스 : 044-201-5628